17

병동에서 간호조무 업무를 한 노동자에게 발생한 유방암

 성별
 여성
 나이
 41세
 직종
 간호 조무 업무
 직업관련성
 낮음

1 개요

□사업장 소속이었던 노동자 ○○○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2년 간 원무행정을 하였고, 1997년 3월부터 1999년 4월까지 3교대로 간호업무보조를 하였다. 이후 1999년 7월부터 현재까지 여러 병원에서 3교대로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, □사업장에서 재직중이던 2016년 8월 17일에 로컬병원에서 유방암을 진단(당시 만 41세)받았다. 노동자는약 18년 간 간호업무보조 또는 간호조무사 업무를 하며 3교대 근무를 수행한 것과 유방암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,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.

2 작업환경

노동자는 1995년부터 원무행정,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였고, 척추 및 관절 관련 정형 외과 병원에서 병동 및 응급실의 3교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병동과 응급실에서의 업무 차이는 크지 않았다고 한다. 1995-1997년은 서류상 확인은 할 수 없었지만 원무행정 등 사무업무를 주간에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1997-1999년의 병동 3교대 업무는 간호조무사자격 취득 전으로 주사업무 외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였다. □사업장에서 제출한 업무내용을 정리하면 물품인계, 근무자확인, 전체인수인계, 병실순회, 회진, 신환받기, 수술환자내리기, 처방확인, 주사, 환자리스트 체크, 식이등록, 차트기록, 환자퇴원교육, 배식확인, 활력징후확인, I/○확인, 수술전 검사 확인, 배액량 확인, 침상정리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. 여러 병원에서의 교대 업무를 정리하면 노동자는 4조 3교대의 업무형태로 병동 및 응급실에서 평균 월 7-8회의 야간근무를 포함한 야간교대업무를 18년 2개월간 수행하였다.

3 해부학적 분류

- 기타암

4 유해인자

- 기타 작업환경 요인

5 의학적 소견

대학병원 의무기록 및 2009년-2016년 기간 동안의 일반건강검진 기록에 따르면 노동 자는 비흡연자였고 음주는 주당 소주 1병 정도 하였으며, 2011년부터 일반건강검진 기록 상 이상지질혈증이 있었고, 체질량지수는 2016년 7월 25일 검사 상 23.7kg/m2였다. 2015년 5월 18일에 자궁근종절제술을 한 바 있으며, 결혼은 하지 않았고 출산 자녀도 없 었으며, 피임약 복용이나 호르몬 치료도 받지 않았다. 초경은 만 12세에 하였고 월경은 30 일 주기로 규칙적으로 하였다. 가족력으로는 형제는 위로 오빠가 3명, 이란성 쌍둥이 여자 형제가 1명 있으며 오빠 3명이 고혈압을 진단받았고. 어머니가 자궁암과 갑상선암을 진단 받은 바 있다고 하였다. 그 외 가족 중에 유방암이나 난소암을 진단받은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.

고찰 및 결론

노동자 ○○○은 은 41세인 2016년 유방암을 진단받았다. 노동자는 1995년부터 1997 년까지 2년 가 원무행정. 1997년 3월부터 1999년 4월까지 3교대로 가호업무보조. 1999 년 7월부터 약 18년 2개월간 여러 병원에서 3교대로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였다. 노동 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X-선, 감마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, 산화 에틸렌, 폴리염화바이페닐, 야간교대근무가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노 동자는 업무 중 산화에틸렌, 전리방사선, 전자기장에 노출될 확률은 매우 적었고, 약 18년 2개월간의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기간도 인정기준에 비해 짧아(직업환경의학회 인정 기준검토회는 관련성 인정기준을 25년 이상으로 제시), 업무가 근로자의 상병에 미친 영향 은 적은 것으로 추정하였다. 따라서 노동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 족하다고 판단한다. 끝.